



제 1136 호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37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2
- 규칙 제838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공 고

- 공고 제2013- 1490호 법원판결문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 19
- 공고 제2013- 149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체 직권말소 예 정공고 20
- 공고 제2013- 1501호 도로지정 공고 21
- 공고 제2013- 15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2
- 공고 제2013- 1514호 법원판결문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 절차 이행 43
- 공고 제2013- 1517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시송달(수현지구 소 2-2호선 도로개설 공사) 44
- 공고 제2013- 152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46
- 공고 제2013- 152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송달 공고 47
- 공고 제2013- 1527호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 고 49

고 시

- 고시 제2013- 105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52
- 고시 제2013- 106호 도로명 주소 폐지 51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25일

남동구 규칙 제8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용시험·승진”을 “임용·시험·승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5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렬이어야 한다.”를 “직렬이어야 한다.(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제17조제1항제10호”를 “제17조제1항제11호” 및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도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 중 “30일내에” 및 “한하여”는 삭제하고,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5조의2 중 “특별승진대상자”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및 출장소”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신 설>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기 능 장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 기 사 : 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기 능 사 :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기사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u>조경, 산림</u>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용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	기사 자격증가산비용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

		기 능 사 :	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 비용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용 적 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 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용 적 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 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 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 산비용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 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 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 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목재창호, 금속재 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 산비용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 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 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 산비용 적용 : 건 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 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0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염색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화 학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 업 연 구	물 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 식 품 개 발	기술사 : 기 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능 사 자 격 증
농촌지도	농 업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가 산 비 율 적 용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농촌지도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자격증 가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비율적용 :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비율적용 :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	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가축인공 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 경	기 을 장 :	산림	
농촌지도	임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 재료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 사 :	축산	가산비율적용
		산업기사 :	축산	: 의사, 한의
		기 능 사 :	축산	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기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 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 로, 어병,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수 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 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 능 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건축사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난 2013. 5. 9.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면접시험 기준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면접위원에 포함하며,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자격증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험위원의 임명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반영 (제12조)
- 면접시험 기준 관련 조문 삭제 (제13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변경사항 반영 (제14조)
- 연구직공무원경력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변경사항 반영 (제24조)
- 특별승진임용기준 인정 기준 개선사항 반영 (제25조의2)
-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사항 규정 신설 등 (제26조의3)
-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자격증 변경 (별표 7의4)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25일

남동구 규칙 제83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

② 공개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 4. 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선정
- 5. 방법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난 2013. 8. 8.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변동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임기 만료된 통장들의 위·해촉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통장 공개모집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통장 공개모집 관련 시기, 방법 등 내용 신설 (제3조)
- 반상회 토의 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제5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등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4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2013가단233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양도인 신청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양수인에게 2013년 10월 17일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칭 : 법원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2. 공 고 기 간 : 2013.10.18. ~ 2013.11.01.

3. 공시송달내용

가. 대상차량 : 34루57**

나. 양수인(송달불능자)

- 성명 : 이하나(1984년)

-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서로**번길

다. 공고내용

-양수인(이하나)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최고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3.11.01.까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11.01.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3항에 의거하여 양수인(이하나)명의로 소유권이 강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121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1항

5.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 032)453-293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49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예고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10. 22. - 2013. 11. 15.(25일간)

○ 공고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2.당 사 자	성 명	장 * 식	상 호	마굿간 PC방
	사업장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0번길 52, 201호(구월동 1261-1번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게임제공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미 이행하고 있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사항 직권말소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6.의 견 제 출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부 서 명	문화체육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번지)		
	담 당 자	장 아 영 (☎032-453-2143 / FAX 032-453-2139)		
	기 한	2013. 11. 15. (금)까지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참조)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2013 년 10 월 21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 - 1501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변경)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3. 10. 22. ~ 2013. 11. 05.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수산동 150-1번지	1,317	6, 4	167	김순례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15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위탁운영, 지도·감독 및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4조)

나.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운영의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라. 시설의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예산·결산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3. 10.22 ~ 11.1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53-2505, FAX : 453-250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10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위탁운영, 지도·감독 및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4조)
-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운영의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 시설의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 예산·결산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5,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 6
- 2013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입구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운영기준에 맞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내용)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업대상)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선정)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및 현장 확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수탁자 선정 후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3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3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위탁은 공모하지 아니한다.

④ 제12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시설 종사자 대표로 하며, 임기는 제3항과 같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및 환불)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해당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실비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운영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복지관장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 법인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확정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복지관은 복지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후원금의 관리) ① 복지관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복지관 명칭이 부기된 관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 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복지관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관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조례 제5조 관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 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별표 2]

이용료 환불 기준(조례 제16조 관련)

구분		환불유형	환불기준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개시일 이후	-납부금액 중 이용중단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일할 계산)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	장수기간이 1개월 이내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이용 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이후	-납부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납부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불
	장수기간이 1개월 초과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불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 산한 금액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삭제 <2012.8.7>

4. 삭제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전문개정 1998.1.7]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15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30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양도인(피고:박지한)에게 소유권강제이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칭 : 법원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2. 공 고 기 간 : 2013.10.23. ~ 2013.11.06.

3. 공시송달내용

가. 대상차량 : 12도72**

나. 양도인(송달불능자)

- 성명 : 박지한(1976년)

- 주소 :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다. 공고내용

- 양도인(박지한)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2013.11.06.까지 강제이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3항에 의거하여 양수인(추종규)명의로 소유권이 강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1항

5.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 032)453-293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517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3. 10. 24 ~ 2013. 11. 8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가.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나.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이*	남동구 장수동 39*-5	14442-0292-3055	반송	주소불명	
이*	남동구 장수동 39*-2	14442-0292-3056	반송	주소불명	
원용*	남동구 장수동 수현로 2*	14442-0292-3057	반송	수취인불명	
이승*	남동구 장수동 36*	14442-0292-3058	반송	주소불명	
오웅*	남동구 장수동 36*	14442-0292-3059	반송	주소불명	
오정*	인천 중구 경동 8*	14442-0292-3061	반송	주소불명	
한웅*	남동구 장수동 41*-2	14442-0292-3062	반송	주소불명	
한웅*	남동구 장수동 41*-14	14442-0292-3063	반송	주소불명	
오장*	인천 서구 가좌2동 장고개로 337번길 16 주공아파트 3*동 20*호	14442-0292-3064	반송	주소불명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5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및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년 10월 24일 ~ 2013년 11월 8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및 납부독촉		
2. 당사자	성 명	이용호	주민등록 번호	590905-*****
	주 소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구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4-5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및 납부독촉		
6. 법적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3)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525호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3. 10. 25 ~ 2013. 11. 13 (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별 첨 참 조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발송 명단

연번	차량번호	차 종	소유자	주소
2013-246	인천32고1910	카니발	이**	인천 중구 참외전로 90, 리치패리스 1/ ***호
251	전북1주5852	아반떼	이**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43-*
266	인천31러8005	르망	김**	인천 부평구 상정로 **
280	인천 연수 나 7521	이륜스쿠터	장**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76번길 40, ***호
286	28버4839	뉴아반떼	유**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벽산@113/ 2***호
287	경기38마4960	포텐샤	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7번길 8, 동신@15/ ***호
300	89도6442	프런어티 1.3	김**	인천 남동구 석산로 207번길 8, ***호
313	77수1065	카니발	조**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12길 **
315	05거5971	엘란트라	SEP**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498-**
318	서울80고4052	포터	오**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7길 59-**
319	06주8257	토스카	이**	인천 남동구 만수로 86, 구 대동@5/ ***호
323	47서4867	트라제GO	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5길 **
324	광주25라3793	카니발	하**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1번길 20-*
328	26노1562	매그너스	(주)청로모터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 ***
337	경기52머1406	스포티지	지**	인천 중구 인중로 174번길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527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0. 25 ~ 2013. 11. 09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권지영 (☎032-453-2268)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원)

연번	현금종류	수납일자	납부자	보관금액	건명
				33,359,404	
1	보관금	2007-12-31	남동구청(자동이체)	31,907,204	전년도 이월액(청산금)
2	보관금	2007-12-31	남동구청(자동이체)	10,970	기여금
3	보관금	2007-12-31	남동구청(자동이체)	250,000	공제회비
4	보관금	2007-12-31	남동구청(자동이체)	616,430	공제상환금
5	잡종금기타	2007-12-31	남동구청(자동이체)	574,800	전년도 이월액(재해의연금)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05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간석부평농장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부지사
2. 사 업 지 구 명칭 : 간석부평농장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08일원(245필지/122,875㎡)
4. 대 행 업 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 관련업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6152)로 문의 바람.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0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7번길 33외 5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7번길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26	2013.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3번길3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27	2013.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87번길 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71	2013.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5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34	2013.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7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2	2013.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7번길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3	2013.10.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